

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

(송아량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31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9일

발 의 자 : 송아량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태호, 이승미, 이은주,
성중기, 오중석, 정지권,
추승우, 이동현, 문장길 의원
(9명)

1. 제안이유

- 사고 및 재난 현장의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함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
- 특히,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을 위한 건강 및 복지 대책 마련에는 소홀한 상황임
- 따라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 및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, 실태조사 및 적절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국민 소방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소방공무원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,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6조)
- 마.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감염관리실 및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- 바. 시장이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사. 시장이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전을 위하여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- 아.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- 자.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『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』
- 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『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』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소방공무원”이란 『소방공무원법』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.
2. “소방활동”이란 『소방기본법』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.
3. “소방활동재해”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.
4. “소방업무”란 『소방기본법』 제3조의 화재 예방·경계·진압 및 조사와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·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.
5. “소방관서”란 서울특별시소방학교,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,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, 소방서를 말한다.
6. “복지시설”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가. 소방관서 매점, 식당, 주유소

나. 수련원, 보육시설

다.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

7. “체력단련시설”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『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(이하 “집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

관한 사항

2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 3.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·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 4.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
 5.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7조(소방활동 보건 관리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·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 및 전용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복지시설 등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

력 유지·향상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,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) ①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(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전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·직업 상담, 취업알선,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,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의 보조)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이번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은 제6조(실태조사), 제7조(소방활동 보건 관리), 제8조(복지시설 등의 설치·운영), 제9조(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), 제10조(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의 보조) 등에서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안 제8조(복지시설 등의 설치·운영) 중 신규로 설치하려고 준비 중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비용

나. 전제

- 안 제5조를 제외한 비용발생 요인 조항은 모두 시장의 재량사항임
- 안 제6조의 집행계획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
- 안 제7조(소방활동 보건 관리)가 규정하고 있는 전용세탁실과 감염관리실은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
 - 2018년 유지관리비 예산: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(사무관리비) 51,600천원
- 안 제8조(복지시설 등의 설치·운영) 중 체력단련시설은 이미 설치·운영 중에 있음
 - 2018년 체력단련기구 확보 예산: 업무용정수물품 및 기타행정용품 중

21,757천원

- 안 제9조(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)은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교육과 함께,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퇴직소방공무원의 취업 정보 공유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. 참고로 법 제13조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음
 - 안 제10조(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의 보조)는 법 제10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, 2018년 현재 4개의 협력병원을 지정 운영 중에 있음
 - 2018년 관련 예산: 소방공무원 보건복지증진(공공운영비) 188,471천원
 - 물가인상, 인건비 상승, 회의건수 증가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
- 다. 추계기간 : 시행 후 5년(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)
 라. 방법 :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은 5년간 **36억 60백만원**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, **연평균 7억 32백만원**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2019)	(2020)	(2021)	(2022)	(2023)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직장어린이집 설치	1,260	-	-	-	-	1,260
	유지관리비	-	600	600	600	600	2,400
	소계(b)	1,260	600	600	600	600	3,660
□ 총 비용(b-a)		1,260	600	600	600	600	3,660

4. 덧붙이는 의견

-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황훈

예산분석관 한기백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phan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복지시설(직장어린이집) 설치(안 제8조)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직장어린이집의 설치(안 제8조)

- 초기 투자비용 및 장기 투자비용(소방재난본부 관련 방침서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소 계	연도별 투자금액	
		(초기)2019년	(장기)2020년부터
총 액	1,860	1,260	600
설계, 감리	50	50	-
시설비	1,000	1,000	-
교재·교구 등 물품 구매	200	200	-
인건비	500	-	500
관리운영비	70	-	70
공공운영비	40	10	30

- 초기 투자비용: 신축과 리모델링 비용, 교재·교구 등 물품구매 비용
= 1,260백만원
- 장기 투자비용: 매년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임 = 600백만원/년